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3. 4. 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4. 10.

다. 의안번호 : 제 2003 - 13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및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하향 조정함 (안 제8조)
 - 3분의 1이상 ⇒ 100분의 30이상
- 입지보조금 (안 제12조)
 - 분양가의 차액 일부보조 ⇒ 정상 분양가의 50%초과 불가, 제조업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지원 불가
-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확대함 (안 제13조)
 - 20명 초과 1인당 30만원 ⇒ 20명 이상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

- 2억원 한도 삭제

○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안 제14조)

- 내국인 신규고용 50명 이상 ⇒ 20인 이상

○ 시설 보조금 연차별 투자 계획의 경우 투자기간을 공장사업개시
일, 공장증설된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함 (안 제15조)

○ 보조금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3. 검토의견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동 조례의 상위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군에서는 조례로 정한 특별한 이
유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과 그에 따른 군비 지원액 등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합니다.

○ 국내기업 투자유치 전망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군비 추가 부담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00. 11. 15 조례 제1599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부칙으로 명시해
놓고 있었던 사항이나,

이번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과 계속 존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상위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조례안의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참 고

-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개정계획
-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